별첨

**추가관세 부과 대상 미국산 수입품 배제 업무 시범적 시행 방법**

1. 신청주체

배제신청 상품의 이익관계자를 신청주체로 하며 관련 상품의 수입•생산에 종사하거나 관련 상품을 사용하는 재중 기업 또는 그 산업협(상)회를 포함한다. 산업협(상)회가 회원기업을 대표하여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환영한다.

1. 배제신청 가능 범위

우리나라가 이미 발표한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추가관세를 이미 실시 중에 있으며 추가관세가 중단되거나 일시 중단되지 아니한 품목을 배제 신청 가능 범위로 한다. 제1차분은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공고>(세위회공고[2018]5호)의 별첨문서 <추가관세 부과 미국산 수입품 리스트 1>에 수록된 품목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16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공고>(세위회공고[2018]7호)의 별첨문서 <추가관세 부과 미국산 수입품 리스트 2>에 수록된 품목을 포함한다. 제2차분은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미국산 수입품(제2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공고>(세위회공고[2018]6호)의 별첨문서1-4에 수록된 품목을 포함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추가관세가 이미 중단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품목은 상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 방식과 시간

신청주체는 재정부 관세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gszx.mof.gov.cn>를 방문하여 요구에 따라 배제신청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차분 품목의 배제신청은 2019년 6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2019년 7월 5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제2차분 품목의 배제신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2019년 10월 18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1. 신청서 작성 요구사항

신청표는 배제신청 품목의 세칙세목(8자리 숫자, 이하 동일)별로 작성한다. 복수의 세칙세목의 품목 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칙세목별로 각각 1부의 신청표를 작성한다. 동일 세칙세목의 품목으로 기업이 이미 산업협(상)회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였고 산업협(상)회가 취합하여 이미 신청을 제출한 경우 기업의 중복적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주체는 상기 홈페이지에 등재된 배제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사항과 요구사항에 따라 배제신청 정보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데이터를 제출하여 다음 세가지 방면으로 신청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i) 대체품을 확보함에 있어 직면한 어려움, (ii)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신청주체에게 초래된 심각한 경제손실, (iii)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관련 업계에 초래된 중대한 소극적•구조적 영향(업계의 발전, 기술의 진보, 취업, 환경보호 등 방면에 대한 영향 포함) 또는 심각한 사회적 결과. 작성 내용이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한다.

신청주체는 작성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지며 확인검사에서 작성 정보를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신청주체의 배제신청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청주체가 제출한 정보는 추가관세 부과 대상 미국산 수입품 배제 업무에만 사용되며 신청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정부의 요구가 있거나 법률•정책 수요 등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제 리스트 공포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유효한 신청에 대하여 일일이 심사하고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전문가•협회•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에 따라 배제 리스트를 제정하고 공포한다.

배제 리스트에 수록된 품목은 배제 리스트 실시일로부터 1년간 미국의 301조 조치 반격 목적으로 부과하는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세금 환급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미 징수한 추가관세를 환급하되 관련 수입업체는 배제 리스트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환급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배제 리스트가 공포되기 전에 이미 추가관세가 중단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품목은 이미 징수한 추가관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세금 환급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으며 첫번째는 배제 리스트에서 세칙세목에 따라 배제시킨 경우이고, 두번째는 배제 리스트에 수록된 품목이 세칙세목 중의 일부에 해당되고 세관이 조건부로 세금을 환급(예를 들어 세칙세목 외에 세관의 코드 추가)하는 경우이다.